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19.] [대통령령 제31409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유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유류판매업의 영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도 유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인)

2021년 1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40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